



노스 캐롤라이나 주
평가 위원회

다음 주제에 관하여:

고위 당국 결정 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 에서, 이 원인은 항소 사건표 번호. . 의 항소 심판 결정에 따른 **(원고의) (고용주의) 항소**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Board”)에 제출되었습니다. 기록 증거가 완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항소 심판이 발견한 사실이 항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04 N.C. Admin. Code 24C .0212(a)(2)에 의거하여, 항소 심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되었습니다. 항소 심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항소 심판은 청문회 기록을 검토하여 기록에 적절하고 충분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 심판은 사실을 발견하도록 지시됩니다...

앞서 언급된 바에 의하여, N.C. Gen. Stat. § 96-15(c)에 따라, 그리고 다음 문단(들)에 설명된 바와 같이, 원인은 (그의)(그녀의) 법정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소 심판에게 송환되어야 합니다.

위에 설명된 대로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정보가 기록에 부족한 경우 항소 심판은 기록을 적절히 개발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재결하도록 지시됩니다. 항소 심판은 사실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법적 결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항소 심판은 기존의 결정을 내려놓고, 새로이 찾은 사실 및 법적 결론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 조사 결과에는 모든 이행 및 재착수의 순서, 재착수 사유, 재착수 명령의 요구 사항 요약,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진행된 각 청문회에 참석한 당사자들과 증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절차적 이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항소 심판은 사법 경제의 이익을 위해 이전의 사실을 사법 경제 목적의 새로운 결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고 청문회가 진행된 후 항소 심판이 증거를 검토하고 이사회 명령을 준수했음이 새로운 결정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가 재소집 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는 심의회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 정식으로 통고되어야 하며, 항소 심판은 이전에 할당된 모든 사건표 번호를 사용하여 청문회가 끝날 때에 새로운 결정을 식별해야 합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수석 항소 심판이 연장을 부여하고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항소 부서에서 송환 기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석 항소 심판이 연장을 부여하고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한, 항소 심판은 이 송환 명령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항소 부서에서 송환 기록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원인은 이 결정에 부합하는 추후 절차를 위하여 **송환**됩니다.

평가 위원회의 위원 Fred F. Steen 와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여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의장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항소 제기:

결정 전달: